

수원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나1152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나11523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2. 25 선고 2014가단37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 선고 2016. 1. 2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2. 25. 선고 2014가단373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3,050m²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경사지붕 창고 478.14m²를 철거하고, 그 토지 478.14m²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 초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마그네슘 보드'라는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공장 건물 신축 후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제공한다.
2. 피고는 공장 건물 신축 후 10억 원 내지 15억 원 상당의 기계 설비를 제공하고 공장을 운영하여 마그네슘 보드를 생산·판매한다.
3. 지분은 피고 55%, 원고 45%로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토목 및 기초공사 등의 일부 공사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이에 부수한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의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12. 1. 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공장 건물 외에 제품을 보관할 창고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자신의 명의로는 창고 건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2011. 8. 31.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1. 11.경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옆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토목 및 기초공사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렸는지 여부, 원고로 하여금 판넬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2012년 1월경부터 약 5개월 동안 피고와 원고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가 2012년 5월경 갑자기 위 현장에 돌아와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2. 5.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파기를 통지하는 내용 및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신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신축을 강행하여 이를 완료하였고, 2012. 8. 28.경 부동산가압류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2. 5. 16.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합2155호로 잔여재산분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4. 2. 6. '원고가 2012. 5. 16. 피고에게 보낸 위 서면은 이 사건 조합의 해산청구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해산되었고, 당시 위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842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축된 이 사건 창고 건물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의 해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게 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478.14㎡ 지상의 이 사건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창고 건물부지 478.1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용호

판사손성희

판사권순현

별지